

#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입사원 채용공고

스마트 사회를 선도하는 국토정보 플랫폼 전문기관인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변화와 도전을 함께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 □ 분야별 채용인원

채용직렬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비고
기획경영직 (3)	기획행정	장애	1	채용형 인턴 으로 선발
	경영회계	장애	1	
		보훈	1	
	소계		3	
국토정보직 (45)	지적측량	일반	39	
		장애	3	
		보훈	3	
	소계		45	
보조직(고졸전형) (6)	지적측량	일반	6	
	소계		6	
합 계			54	

- 분야별 주요업무 내용은 직무설명서 참조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은 하단 참조
- 기획경영직(기획행정, 경영회계) 분야 보훈채용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대상 채용
- 국토정보직(지적측량) 분야 보훈채용은 국가보훈처 추천자 대상 채용
  - 추천대상자 관련 등은 전북동부보훈지청(063-239-4520) 문의

## □ 고용형태 및 근무지

### ○ (고용형태)

- 정규직(기획경영직, 국토정보직, 보조직): 약 4개월 간 채용형 인턴(연수교육 기간 포함)을 거친 후 교육성적, 업무수행능력, 근무자세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규직으로 임용
    - \* 기획경영직 분야는 인턴기간 중 일정기간 현장업무 근무 예정
    - \* 채용형 인턴 평가기준: 공사 「청년인턴 관리지침」 제18조(청년인턴 평가)
    - \* 정규직 임용직급: (기획경영직·국토정보직) 7급 / (고졸전형) 보조직
  - 정규직(보조직\_고졸전형): 정규직 임용 후 4년 이상 근무하고 공사에서 정한 전직절차를 통과한 경우 7급으로 전환
- ### ○ (근무지) 공사 전국단위 기관 배치

## □ 지원 자격 안내

- (블라인드 채용)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어학성적 제한 없음
  - 단, 18세 미만자(2004.12.31. 이전 출생자 가능), 임용예정일(2022.12.26.) 기준 공사 정년(60세) 초과자 제외
- (기준일) 자격증, 학력 등 지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근무기준) 임용예정일 이후 전일 근무 가능한 자(쏘 분야 공통)
- (중복지원) 채용직렬 및 채용분야를 달리하여 중복 지원 불가
- (지적자격) 지적측량 분야(국토정보직, 보조직)의 경우 지적자격(지적기술사/지적기사/지적산업기사/지적기능사) 보유자만 지원 가능
  -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022.10.19.)까지 취득하여 등록번호(자격번호)가 부여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 (병역)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고졸전형은 제외)
  - 단, 군 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전에 전역하는 자로 교육입소 및 인턴기간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 **(고졸전형)**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포함
  - 공고일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지원 가능
    - \* 단, 18세 미만자는 제외(2004.12.31. 이전 출생자 가능)
  - 전문대,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지원불가
  - 지원서에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후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 이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또는 징계하고 됨에 유의
- **(경력증명서 기간종료일 기준)** 경력증명서상 기간종료일이 현재일 경우 지원서 상에 경력사항 기간종료일을 접수마감일로 입력
  - \* 접수마감일 이후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결격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1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5조 (결격사유) 직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 되거나,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20.07.01.>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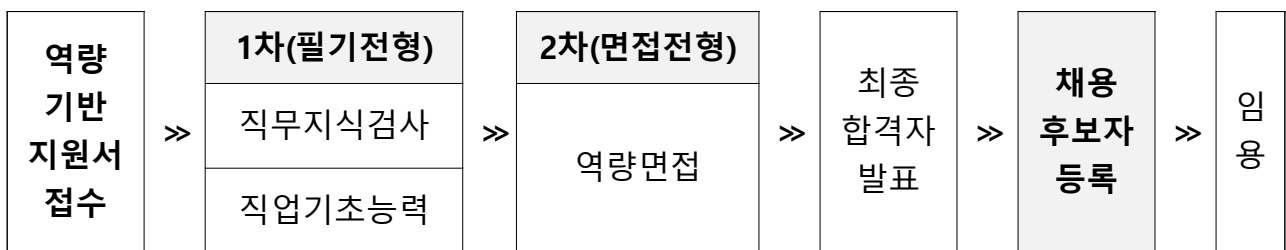
채용분야			자격 요건(모두 충족)
기획경영직	기획·경영·회계	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경영·회계	보훈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국토정보직	지적·측량	일반	• 지적 자격 보유자로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장애	• 지적 자격 보유자로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보훈	• 지적 자격 보유자로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국가보훈처 추천자
보조직 (고졸전형)	지적·측량	일반	• 지적 자격 보유자로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지적 자격: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중 1개 이상 보유

※ 자격증 기준일: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022. 10. 19.)까지 취득하여 등록번호(자격번호)가 부여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2. 전형방법 및 절차

□ 직무능력중심 선발절차



□ 전형별 배점기준

역량기반 지원서	1차(필기전형)		2차(면접전형)	최종합격자 결정
적격/ 부적격	직무지식검사 (70%)	[직업기초능력]	역량면접(100%)	1차(60%) + 2차(40%) 합산
		직업성격검사 (적격/부적격)		
		직무능력검사 (30%)		

## □ 전형별 안내

### 【역량기반지원서】

- 해당 직무와 관련된 교육, 자격, 경험 또는 경력사항 등을 작성하는 NCS 기반 직무역량 중심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 인적사항(생년월일, 연령, 성별, 가족관계, 출신지역, 사진), 학교명, 전공, 학점, 어학성적 기재란 없음
- 합격자 결정 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단, 부적격 지원서의 경우 1차 시험 응시(수험표 출력) 불가
- 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작성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전형별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첨부파일 미첨부 및 지원서 검토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1차 시험 응시가 불가능
  - \* **부적격 사례:** 자격증 파일 첨부 항목에 다른 파일 첨부 및 지원서 자격증 항목에 입력한 자격증 정보와 파일에 첨부한 내용이 불일치한 경우(단, 지원서에 입력한 자격증 정보 또는 첨부한 파일을 활용하여 자격증 보유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지원기업명을 타사 명으로 기재, 자기소개서 질문과 무관한 내용 입력, 자기소개서 최소작성 분량(문항당 400자)에 미달한 경우
  - 지원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단, 이전 직장명(학교 또는 지역명 포함 시 블라인드 처리), 학과명 등은 기재 가능
  - 지원서 오기재, 허위제출, 증빙자료 미제출, 전형 진행과정 중 연락 불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최종제출 후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수정 및 보완 불가

**【채용분야별 필기시험 개요】**

시험구분	채용분야		시험내용(문항수)	시험시간
직업기초 능력평가	공 통		직업성격검사(150)	20분
			직무능력검사(60) (직무별 4개 영역)	60분
직무 지식검사	기획경영	기획행정	행정학(20), 경제학(20), 기초통계학(20)	70분
		경영회계	경영학(20), 회계학(20), 기초통계학(20)	
	국토정보	지적측량	지적학(15), 지적측량(20), 관계법규 I (15), 기초통계학(10)	
	보조직 (고졸전형)	지적측량	한국사(60)	
합 계				150분

**【직업기초능력평가】**

- 계산기 사용 불가
- **(직업성격검사)** 공사 인재상에 부합하는 마인드 측정
  - 점수 미반영, 필기시험 결과에 상관없이 부적합자 불합격 처리
- **(직무능력검사)** 직무별 NCS 직업기초능력 4개 영역
  - (기획행정/경영회계)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능력
  - (지적측량) 수리, 문제해결, 정보, 기술능력

**【직무지식검사】**

- 계산기 사용 기준
  - (기획경영직) 단순 계산 기능 소형전자계산기만 사용 가능
  - (국토정보직) 일반 공학용 전자계산기 사용 가능
  - \* 공학용 계산기는 사용자 본인이 감독자 앞에서 프로그램을 리셋한 후 사용
- 채용분야별 직무지식검사 내용 안내
  - **(출제유형)** 객관식 4지선다형 60문항

- (관계법규 I)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시행규칙」,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 채용분야별(지적측량) 관계법규는 해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하며, 채용 공고일 기준 **현행법**으로 함
- (기초통계학) 범위와 난이도는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제목: 기초 통계학 예제문제)에 공지된 예시문제 참조
  - 40점 미만 득점하거나, 가산점을 합산한 총 점수가 60점(장애인 및 보훈분야 5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역량면접】**

- 경험면접, 상황면접 등으로 공사 직원으로서 필요한 역량 검증
- 면접대상 인원: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지적측량은 1.5배수)
- 한 면접위원의 점수합계가 40점 미만 또는 쉰 면접위원의 종합평균이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3. 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0. 4.(화) 10:00 ~ 2022. 10. 19.(수) 17:00
- 접수방법 : 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www.lx.or.kr](http://www.lx.or.kr))
  - 지원서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의 지원자가 동시에 접속할 경우 작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일 전에 접수하시길 바라며, 지원서 작성방법은 접수화면의 '작성요령' 참조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목록
입사 지원서 (스캔파일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측량분야] 지적자격증 자격취득확인서</li> <li>* 큐넷(<a href="http://www.q-net.or.kr">www.q-net.or.kr</a>) 사이트에서 확인서 발급가능</li> </ul>

\* 각 제출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구 분	제출서류 목록
필기전형 합격자 (원서접수 시스템 업로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전북지역인재]</b> 최종학교 재학, 졸업(예정)증명서</li> <li>• <b>[고졸전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재학: 고등학교 재학(졸업예정)증명서</li> <li>- 대학 미진학: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자금대출·장학금신청증명서</li> <li>*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신청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li> <li>- 대학 중퇴: 대학교 제적(중퇴)증명서</li> </ul> </li> <li>• <b>[남성]</b>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병적사항 포함)</li> <li>• <b>[해당자]</b> 가산점 대상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확인서</li> <li>• <b>[해당자]</b> 공무원(지적업무) 경력증명서</li> <li>• <b>[해당자]</b>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저소득층, 장애인 증명서</li> </ul>

\* 각 제출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4. 채용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지원서 접수	10. 4.(화) ~ 10. 19.(수)	온라인 접수
필기시험 안내	10. 28.(금)	지원서 적격여부, 필기시험 장소/시간 공지
필기시험	11. 5.(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11. 15.(화)	홈페이지, 지원서 접수사이트
역량면접	11. 25.(금)	
최종합격자 발표	12. 14.(수)	홈페이지, 지원서 접수사이트
채용후보자 등록	12. 14.(수) ~ 12. 15.(목)	
발령 예정일	12. 26.(월)	

\* 상기 일정은 업무 형편 및 코로나19 확산정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5. 채용 우대사항

##### 채용우대제도 적용방법

- 채용우대제도는 합격자 중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 외로 추가로 합격, 단 공사가 정한 채용합격 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
- 전형 단계별로 적용하며 각 채용분야별로 목표비율을 적용



## (1) 양성평등채용목표제 25%

- (적용대상) 채용공고 기준 선발예상인원이 5명 이상인 채용분야
- (적용방법) 면접전형 후 최종합격자 결정시 어느 한 성의 합격인원 비율이 25%에 미달하는 경우 채용합격 하한선(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처리

※ 선발예상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반올림,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 (2) 이전 지역(전북)인재 채용목표제 30%

- 전북지역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서 해당지역 소재 학교 출신자의 채용확대를 위하여 지역인재채용목표제 시행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 (이전지역인재 개념)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 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한 자로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 (적용대상분야) 정규직 신규채용 중 채용예정인원이 채용분야별 연(年) 인원 5명을 초과하는 경우
- (적용방법) 각 전형단계별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채용합격 하한선(합격선 -5점) 이상인 이전지역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처리

※ 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함

※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639호, 2020. 6. 1.) 적용

## 6. 동점자 처리 기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적분야 상위자격자, 자격가점 고득점자, 경력가점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7. 예비합격자 선정

-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며 입사포기자 및 부정합격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추가합격 처리 합니다. 이때, 예비순번은 분야별 합격자의 10%까지 부여하며 채용예정인원이 14명 이하인 경우 2명을 부여합니다.
-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적용 채용분야에서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분야 총 예비합격자 인원 중에서 목표비율(30%)에 비례하여 지역인재 예비합격자를 선정합니다.
- 최종합격자 공고 시 부여된 예비합격자 순번은 임용예정일(2022.12.26.) 까지 유효합니다.

## 8.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필기 또는 면접전형 당일 격리중인 응시생의 시험방법에 대해 별도 안내 예정으로 추후 안내 공고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신분 확인 시를 제외하고는 시험 마칠 때까지 마스크를 계속해서 착용하여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조치(응시 제한 등)를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응시자는 필기 및 면접시험장 출입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증상 확인 후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유증상자는 감독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의심 응시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자체,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 될 수 있습니다.
- 상기사항은 정부의 감염병 방역지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전형 단계별 상세 안내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위생 관리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 9. 유의사항

- 제출 또는 작성서류에 허위 혹은 위·변조임이 판명되거나 부정행위자는 합격을 무효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신분확인용)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미지참시 퇴실 조치하여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인정되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2003.11.6. 이후 출생자에 한 함), 기간 만료 전의 여권, 모바일 신분증(단, 캡처 또는 이미지는 인정하지 않음)
- 합격 후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을 거부하는 자는 합격 취소하고 1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 단계별로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를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합격 후 근무지 배치는 본인 희망지역을 고려하되 공사의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전국 단위로 배치되며, 지적측량분야 신입사원은 정규직으로 임용 후 3년간 다른 지역본부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 온라인으로 제출된 채용자료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후 즉시 파기합니다.(최종합격자 제외)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합격 이후에도 합격 취소가 가능하며 사법처리 등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공사에 취업할 수 없으며, 채용 이후에도 비위면직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징계하고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내용은 공사 업무 형편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사전에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2022. 9. 28.



[별표1]

## 입사지원서 작성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 유의**

-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본 인적사항 이외의 모든 항목에는 개인 식별 가능 정보(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신지, 출신학교명, 가족관계 등)가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단, 이전 직장명(학교 또는 지역명이 포함된 경우 블라인드 처리), 학과명 등은 기재 가능
- 지원자가 의도적으로 개인 식별 가능 정보 기재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허위기재(오기재 포함) 등 유의**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기본 인적사항과 신분증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또는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단계별 전형응시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본 인적사항에 오류가 없도록 유의
- 필수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경력·경험·교육·자격사항에 대한 증빙 자료를 사전확인하고, 증빙자료와 동일한 내용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해야 함
- 입사지원서의 모든 항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사항을 기재(증빙자료 불일치, 허위, 위·변조, 오기재 등)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제출 미비의 경우(입사지원서 불일치, 허위, 위·변조, 오기재 등)에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등록번호(자격번호) 입력 유의사항**

- 1(아라비아 숫자 일), l(영문 소문자 엘), l(영문 대문자 아이) 간 혼동
- 0(아라비아 숫자 영), O(영문 대문자 오) 간 혼동
- 영문 대·소문자 간 혼동(대문자 O와 소문자 o 등)

-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입사지원서의 사실여부 확인 및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별표2]

## 한국국토정보공사 채용시험 가산점 안내

○ 적용방법

- 가산점은 직무지식검사 만점의 %로 가산되며, 40% 미만 득점한 경우 가산점 미적용
- 취업지원가점, 자격가점, 경력가점은 각각 합산
- 취업지원대상자는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각 시험별 만점의 %로 가산

구 분		가 산 점 수	비 고
취업지원 가점	○ 취업보호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10% 5%	대상별 가산적용은 별표2 참조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5%	
자격가점	○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도시계획기사, 토목기사, 정보처리기사 이상, ○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 무사, 한국사능력1급	2%	- 자격가점은 소지자격에 따라 각각 합산하되 동일 자격의 경우 상위자격 하나만 인정 (예시. 정보처리기사와 정보처리기능사 보유시 자격가점은 2%로 적용됨)  - 최대 4%까지 인정
	○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 기사, ○ 전산회계운용사 1급, 한국사능력2급	1.5%	
	○ 측량기능사,전산응용토목제도 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전산회계운용사 2급, 한국사능력3급	1%	
경력가점	○ 한국국토정보공사, 공무원(지적업무) 경력 - 89일이상 150일미만 - 150일이상 273일미만 - 273일이상 365일미만 - 365일이상 730일미만 - 730일이상	0.5% 1% 2% 3% 5%	- 토목기사이상 자격은 토목시공,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기술사에 한 함

[별표3]

## 취업보호대상자 등의 가산적용 비율 안내

대 상 별	10% 가점	5% 가점
독립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국지사 본인</li> <li>· 순국선열 유족</li> <li>·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국지사 가족</li> <li>·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li> <li>·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li> </ul>
국가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 본인</li> <li>·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의 가족</li> <li>·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li> <li>·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li> <li>·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li> </ul>
5·18민주 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li> <li>·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li> <li>·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li> <li>·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li> <li>·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li> </ul>
특수임무 수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li> <li>·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li> <li>·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li> <li>·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li> </ul>
고엽제 후유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가족</li> </ul>

※ 관련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함

※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각 시험별 만점의 가산점수(%)로 가산한다.